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69호 2026. 5. 26(화)

입법예고

○ 「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1

안 내	○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○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540호

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5월 26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개선·정비하고,
-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, 제2조)
-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 규정 정비(안 제3조)
- 자살예방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 규정 정비(안 제5조)
- 자살예방 지원 등 규정 정비(안 제6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: [붙임 1]

4. 관계법령: [붙임 2]

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4조, 제7~8조, 제13조, 제17~18조, 제20조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5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(참조 : 건강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
-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직접 방문
 - 주 소: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(화정동,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)
 - 팩스번호: 052) 209-6919
 - 전자우편: 10respect@korea.kr

6. 참고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(052-209-69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누리집(www.donggu.ulsan.kr)[동구소식 - 고시/공고 - 입법예고]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조 례 명	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			
의견제출자	성명/단체명		전화번호	
	주 소			
조례안 조문	검토의견(의견제출 내용)			

「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
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)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귀하

붙임 1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제3조(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·홍보
3. 지역별·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
4.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5. 자살 시도자, 자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
6.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자살예방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자살예방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자살예방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
2.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
3. 자살예방 관련 기관·단체의 관계자
4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 정책의 자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

센터에 두거나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자살예방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상담·치료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·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 관계법령

□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 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
7.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8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5.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제18조(자살예방을 위한 홍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·상담치료·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